

[별지 제15호 서식]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(제40조제1항 관련)

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

귀하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당사가 년 월 일(통지요구일)부터 최근 3년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·제공(직접 제공한 경우에 한함)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□ 이용내역

이용날짜	이용목적	이용한 개인신용정보의 내용	보유 및 이용기간

□ 제공내역

제공받은 자	제공목적	제공한 날짜	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내용	보유 및 이용기간

* 기재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내용 별도 첨부

본 통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○○○○(주) 대표이사 (인)

담 당 자	직위 : 성명 : (전화번호 :)
영업점 주소	

<참고 :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 작성 방법>

□ 이용 및 제공된 신용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

- 식별정보, 신용거래정보, 신용능력정보, 공공정보, 신용등급(평점)정보, 신용조회정보 등으로 구분
- 종류별로 세부 설명을 기술할 것

☐ 이용목적에 대한 안내

-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에 근거한 이용 또는 다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구분하여 명시

☐ 제공받은 자의 범위

- 이용자는 금융회사, 신용정보집중기관, 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채권추심회사, 공공기관, 그 밖에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, 본인 등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 기재

☐ 제공한 목적에 대한 안내

- 여신심사, 신용카드발급, 신용상황변동확인, 신용정보 집중(수집), 채권추심, 신용조사, 고용, 민원처리, 재판, 수사, 본인조회 등으로 구분
- 종류별로 세부 설명을 기술할 것
(예) 여신심사 : 대출, 지급보증 등의 신규 취급, 기간연장, 한도변경, 여신사후관리 등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

☐ 그 밖의 안내 사항

- 그 밖에 본 통지내용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내용 기재